

서울고등법원

제 1 1 행정부

판 결

사 건 2017누49388 시정요구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마틴 윌리엄스(Martyn Williams)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세컨드 스트리트 501, 스
위트 600
(501 Second Street, Suite 600, San Francisco, United States of
Americ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원
피고, 항소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직무대리 사무총장* 허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우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21. 선고 2016구합62993 판결
변 론 종 결 2017. 9. 13.
판 결 선 고 2017. 10. 18.

*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 모두가 공식 상태이므로 대통령령인 직무대리규정 제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직제에 따라 사무총장을 위원장의 직무대리자로 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설령 그렇지 않고 현재 피고 대표자의 직무를 적법히 대리할 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38조, 제235조, 제64조 참조), 이 사건 심리와 판결선고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4. 주식회사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드림라인 주식회사,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케이아이엔엑스,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대하여 한 시정요구(접속차단) 처분 중 노스코리아테크(<http://northkoreatech.org>)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보충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6행의 "피고는"부터 같은 쪽 8행의 "기각한 점"까지를 삭제

○ 제6쪽 아래에서 4행 마지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피고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나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행정청의 내부적 절차를 정한 내부준칙에 불과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 전체에 대한 시정요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들이 정한 '최소규제의 원칙' 등은 헌법상의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을 재확인하거나 이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것이 피고의 주장대로 내부준칙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를 판단한다고 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보충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사업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등 어디에도 외국인이 정보를 국내에 유통시킬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외국인에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조약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이익을 침해당했을 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제2항에 의하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은 1990. 7. 10. 국내에서 발효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인데, 위 규약 제19조 제2항은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

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모든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of all kinds, regardless of frontiers, either orally, in writing or in print, in the form of art, or through any other media of his choice.)'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규정들에 의하면 외국인인 원고에게도 국내법상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할 것이고[헌법상의 기본권 중 이른바 '인간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은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마367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5 결정 등 참조), 언론·출판과 같은 표현의 자유는 성질상 '인간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와 같은 외국인의 경우 위 국제규약을 들지 않더라도 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성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호에 따라 제정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3조 제2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정보'도 심의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배기열 배기열 

 판사 박재우 박재우 

 판사 정승규 정승규 

정본입니다.

2017. 10. 19.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현성훈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